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21호

2015년 2월 27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례 제122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2
- 조례 제122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5

규 칙

- 조례 제122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

공 고

- 공고 제2015- 358호 공장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13
- 공고 제2015- 37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4
- 공고 제2015- 3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4
- 공고 제2015- 3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49
- 공고 제2015- 38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54
- 공고 제2015- 39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예고공고 59
- 공고 제2015- 39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0
- 공고 제2015- 39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정재공고 72
- 공고 제2015- 3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82

고 시

- 고시 제2015- 26호 도로명주소 고시 92
- 고시 제2015- 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래지구 중2-110호선)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 94
- 고시 제2015- 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래지구 소1-3호선, 소1-4호선) 사업 실시계획 고시 96
- 고시 제2015- 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노선) 사업 실시계획 고시 98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 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122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전문화 및 다원화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해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공무원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 지급은 구 산하 공무원 중 대학 이상 야간과정에서 수학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임기제는 제외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하여 지급하며, 입학금은 전액을, 등록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은 실 납부금액의 1/2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수학기관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제4조(장학금 지급 분야) 우수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의 장학금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환경분야
4. 교통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분야

제5조(장학금 지급 시기) 장학금 지급은 해당공무원이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제출 시 계좌 입금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으로 신분상실시 지급된 당해 학기분 장학금 회수
2.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지급된 당해 학기분 장학금 회수
3. 학위논문 미통과로 학위취득 불가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회수(단, 학기 연 장으로 학위취득 가능 시는 연장 학기분 장학금 지급 중지)
4. 수학과정중 성적이 불량한 경우 및 학위취득 소요기간 경과 시 장학금 지급 중지
5. 성적불량사유로 해당학교로부터 유급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 지급 중지 및 지급된 당해 학기분 장학금 회수
6. 군에 입대하거나, 건강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장학금 지급 중지

제7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남동구청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위탁교육과 관련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복무연한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장학생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자치행정의 전문화와 다원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무역량계발 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 조정 (안 제2조)
 - 전문대학이상 → 대학이상 야간과정
-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지급금액 기준 제시 (안 제3조)
 - 실 납부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조항 신설
- 장학금 지급 위탁교육훈련 분야 제시 (안 제4조)
 - 지방행정(지방재정), 지역개발, 환경, 교통 등
- 장학생 의무조항 추가 (안 제7조제3항)
 - 위탁교육 후 관련 직무분야 복무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2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122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을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 중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사업 시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호에서 제5호까지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7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호, 제4호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호,제4호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제4호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제2호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별표 2]

공인의 규격

(단위 : cm)

구 분			한 변의 길이	비고
청 인	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		3.6	
직 인	기 관 장 인	• 구청장	2.4	
		• 4급,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	
		• 6급, 7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	
	회 계 관 계 직 인	•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 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의 직인	2.0	
		• 출납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의 직인	1.8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4. 11. 29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사항(회계관계 공무원 신설 및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회계관계 공무원 신설 및 변경(안 제3조)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회계관계 공무원	-	통합지출관	신설
	경 리 관	재 무 관	
	채무관리관	부채관리관	

- 회계관계 공무원 신설 및 변경에 따른 “공인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5년 2월 27일

남동구 규칙 제87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해 수 사 용 료 (제 4 조 관 련)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해수사용료	ton (톤)	3,500원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해수사용료의 장기간 단가 미인상(2003년부터 동결)으로 인한 수지 적자 발생 및 추가 시설비 투자 필요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4년 12월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적정 범위로 사용료를 인상하여 해수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해수사용료 단가 변경 (안 별표)
 - (현행) 2,500원/톤 → (개정) 3,500원/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358호

공장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4. 2. 24. ~ 2014. 3. 12.(16일간)
2. 처분제목 : 공장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 제조시설 멸실
4.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5. 처분대상

회 사 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업종	취소일
케이다이아몬드	강현조	인천.남동구 논현고잔로 110번길 46 (고잔동)	분말야금제품 제조업(25911)	2015. 2. 11

6.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0)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5-37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어린이 놀이기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과 어린이들에게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5. 2. 27. ~ 3. 20. (21일간)

4. 주요 제정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유지관리계획, 의무 및 결과 조치 등 규정(안 제3조~제5조)
- 안전감시망 구축 및 업무분담 등 규정(안 제6조, 제7조)
- 예산확보, 표창 및 기타사항 등(안 제8조~제10조)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안전총괄실장)에게 서면
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6192, FAX 453-23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과 어린이들에게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 유지관리계획, 의무 및 결과 조치 등 규정(안 제3조~제5조)
- 안전감시망 구축 및 업무분담 등 규정(안 제6조, 제7조)
- 예산확보, 표창 및 기타사항 등(안 제8조~제10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제15조(안전점검 실시), 제20조~제22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지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

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는 별표의 안전점검실시 항목 및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분담하게 한다.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푹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고리(‘S’ 혹)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구 분	점 검 항 목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이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구 분	점 검 항 목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3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03년 4월시행)이후 장기간 수수료 인상이 없어 주민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입각한 배출자 부담 원칙 확립 필요
-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정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
- 동 시행규칙 폐지에 의한 일부 조항 반영 등에 따른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 제9조제3항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변경에 따른 [별표 3]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신설
- 제13조제5항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문제발생 시 통보 조치규정 신설
- 제2조, 제8조, 제15조 ~ 제17조 :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동 시행규칙 폐지에 의한 일부 조항 반영 등에 따른 조례 개정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청소과, 전화 : 032-453-6130, FAX : 032-453-25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년 2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03년 4월시행)이후 장기간 수수료 인상이 없어 주민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입각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제9조 제3항)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 [별표3]

용량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가격	120원	180원	300원	600원	1,200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기준 수수료 [별표3]

구분	단위	수수료
부피 수수료	리터(ℓ)	60
무게 수수료	킬로그램(kg)	70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12.11)
- '14.9월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개최결과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제8조의4”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원 할 수 있다.”을 “지원 및 포상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36
조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으며,”를 “있고”로 하고 “있다.”를 “있으며,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지역을”를 “남동구 전지역을”로 “정하고”를 “정하되 지역특
성과 재활용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로,
“정하여야 한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물기를”을
“물기 및 이물질을”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시·군·구청장과

대행 계약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에 대하여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처리하여야”를 “재활용하여야”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단위 무게(kg)당 수수료에 150/100을 가산하여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며, 징수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제15조제1항 중 “물기를”을 “물기 및 이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제1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량배출사업장은”을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

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으로, “1월말”을 “2월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으로, “서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을 “서류와 제6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

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수집·운반의 중지)

- ① 수수료를 1월 이상 체납하는 사업장 등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음식물류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공동용기 사용 배출지역이나 배출자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을 중지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의 형태의 영업점과 일반음식점 중 음식료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체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 6. (생략)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 ----- ----- ----- -----, -----, ----- ----- ----- ----- -----,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② (생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조제3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생 략)

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

③ -----

----- 지원 및 포상할 수 있다.

④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

⑤ -----

-----.

1. (현행과 같음)
2.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3. (현행과 같음)

⑥ -----

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 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② (현행과 같음)

③ ----- 있고

-----있으며,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
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
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
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
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
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
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생 략)

④ (생 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① ~ ④ (생 략)

<신 설>

-----남동구 전지역을

--정하되, 지역특성과 재활용 처
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
정 · 운영할 수 있으며,-----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물기 및 이물질을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시 · 군 · 구청
장과 대행 계약한 음식물류 폐기
물의 재활용 시설에 대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
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
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
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
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
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
터 제7호까지의 규 정 중 어
느 하나 해당하는 폐기물 재
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
기물처리 신고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
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
치승인(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
치·운영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

-----.

②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
로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
영하는 자, 법 제25조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
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용<신 설>

2. (생 략)

3. 제2호에 따라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

4. 제3호에 따라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
---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따라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

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 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

4. -----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의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 2월말-----
-----.

5. -----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
----- 서류와 제6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
-----.

가. (현행과 같음)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
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
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
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
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신 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
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점검) (생 략)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
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
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
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6. 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법 시행규
칙 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
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
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 점검) (현행과 같음)

1.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

및 처리 여부

2. (생 략)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1조(수집·운반의 중지)

①수수료를 1월 이상 체납하는 사업
장 등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공동용기 사용
배출지역이나 배출자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을 중지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열거
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별표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 (제9조 제3항 관련)

구 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판매가격	120원	180원	300원	600원	1,200원
판매수수료	9원	13원	22원	43원	86원
봉투규격 (가로-세로,Cm)	19×22.9	22×26	26×31	33×40	41×49

※ 판매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에 포함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기준 수수료

구 분	단 위	수수료
무게 수수료(무게 산정 시)	1kg	70원
부피 수수료(부피 계량 시)	1ℓ	60원

○ 부피환산계수 = 1ℓ에 0.86kg 적용

<참고 사항>

■ 폐기물 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2012. 11)

I. 목 적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00년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
-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II.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III.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
-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수수료 요금현실화를 위해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 조정하되,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 종량제봉투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외의 장소에서 종량제봉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종량제봉투 방식을 '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 함
- 수수료 종량제방식에 기초하여 배출, 수집·운반업무에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용함
-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종량제 방식 선정

IV. 세부 시행지침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방식 선정 원칙

- 배출량은 무게단위로 산정하고, 수수료 요율 차등부과를 위해 후불 방식 우선 고려
- 종량제 방식 권장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기존 수거체계를 활용하여 단계적 개선이 가능한 방식 선정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비용 절감 및 수수료 상승에 따르는 연차별 비용효과와,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르는 초기투자비용을 분석하여 선정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의 원칙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산정
- 수수료 산정기준은 무게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피단위 종량제 시행시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부피환산계수는 1년 주기로 적합성을 평가(지역 내 표본지역 대상)
- 특광역시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시·구·군에 대하여 부피환산계수를 통일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음

나.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 \frac{\text{종량제방식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합계}}{\text{종량제방식별 수집} \cdot \text{운반} \cdot \text{처리에 소요된 비용합계}} \times 100$$

○ 종량제방식별 봉투, 칩, 납부필증 등의 선납부 수수료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판매수입으로 산정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종량제방식별로 산정

○ 종량제방식별 단위무게당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 kg당 수집·운반·처리비용 x 발생량 x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목표치)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해 주민부담률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함
- 수수료의 현실화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 현재를 기준으로 '13년 말까지 현재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고, 매년 상향 조정하여 특·광역시 '15년까지, 일반 시는 '16년까지, 도·농 통합 시는 '17년까지, 군 지역은 '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 달성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

(%)

구 분	'10년 (기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국 평균	32.1	50	60	70	80	80	80
특·광역시	54.6	60	70	80	80	80	80

- 도시유형별로 상·중·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는 높게,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는 낮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가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는 동 가이드라인(안)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주민부담률 목표치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례에 반

영하여야 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하고,, 지나치게 낮은 주민부담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 적정 수수료의 부과는 해당 자치단체별 여건(수집·운반 및 처리)이 다르므로 자치단체별로 원가 산정 후 정하도록 함
- 지자체별 수수료의 편차가 클 경우 주민들 간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특·광역시자치단체 내의 시, 구 지역은 동일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특광역시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음
-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 선납 또는 후납 방식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 요율 차등 부과제를 감안하여 후납방식 우선 고려
- 후납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업소별)로 부과하는 종량제방식을 강구하되 거점 종량제방식 적용지역에는 단지별로 부과할 수 있음
-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한 칩 배부(선납제), 수수료 면제(후납제)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

2015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수수료 인상 재협의 - 2014년 9월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 개최 결과 -

■ 안건내용

- 환경부 가이드라인(단계적으로 주민부담률 80%)에 의거
각 군·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필요

■ 실무부서 의견수렴 결과

- 이미 인상을 추진한 지자체 부담률 40~50% 수준에서
2015년 단계적 인상(안)을 추진

■ 협의결과

- 주민 부담률 40% 수준에서 구별로 인상 하기로 합의
 - 시행시기 : '15. 1. 1
 - 가정용 봉투 : 부피 60원/ℓ, 무게 70원/kg
 - 음식점 봉투 : 40% 수준에서 인상 추진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3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봉투 수수료 인상에 대한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생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3]의 폐기물봉투의 규격 및 가격 중 음식물 봉투의 규격 및 가격 삭제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청소과, 전화 : 032-453-6130, FAX : 032-453-25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년 2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봉투 수수료 인상에 대한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폐기물봉투의 규격 및 가격[별표3]
- 음식물 봉투의 규격 및 가격 삭제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폐기물봉투의 규격 · 용도 및 가격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cm) (쓰레기를 담는부분)	가 격 (원)	용 도
3	22 × 26	90	일반용 봉투
5	26 × 31	160	일반용 봉투
10	33 × 40	310	일반용 봉투
10	36 × 36	310	재사용 봉투
20	41 × 49	620	일반용 봉투
20	45 × 45	620	재사용 봉투
30	58 × 46.5	930	재사용 봉투
50	56 × 67	1,540	공공용 봉투, 일반용 봉투
100	71 × 85	3,070	공공용 봉투, 일반용 봉투
30 (12kg)	48 × 57	2,350	가정사업계용 봉투
60 (24kg)	60 × 69	4,700	가정사업계용 봉투
125 (50kg)	80 × 90	7,870	가정사업계용 봉투

주) 끈 삽입형 봉투규격 계산식

※ 근거 : 한국플라스틱 표준

1) 봉투의 너비 : 기존 봉투 규격기준 적용

2) 봉투의 길이 : $\{[\text{반지름}(r) \times \text{반지름}(r) \times \pi] \div \text{봉투용량}\} + \text{지름}(d)$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38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규칙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및 현실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현행화에 따른 동 조례 시행규칙의 흡수·폐지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안 본문)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청소과, 전화 : 032-453-6130, FAX : 032-453-25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 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및 현실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현행화에 따른 동 조례 시행규칙의 흡수·폐지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안 본문)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행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39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예고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하여, 영업을 폐지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예고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2. 27. - 2015. 3. 19.(21일간)

○ 공고 및 통지사항

1.예정된 처분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2.당 사 자	성 명	김 * 희	상 호	명동 게임랜드
	사업장	인천 남동구 하촌로71번길 39, 2층(만수동)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게임제공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폐업신고를 미 이행하고 있음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사항 직권말소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6.의 견 제 출	기 관 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부 서 명	문화체육과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번지)		
	담 당 자	민 진 규 (☎032-453-2143 / FAX 032-453-2139)		
	기 한	2015. 3. 19. (목)까지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참조)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2015 년 2 월 27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5-39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2.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미비점 보완과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각종 경연대회 등에 대한 우수자 시상 근거 마련(안 제7조)
 - 각종 경연대회 및 발표회, 직무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우수자 시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 문화·체육·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 기능 명문화(안 제16조)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참여 활성화로 주민자치기능 강화
- 주민자치위원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17조)

- 임기 2년에 무제한 연임 가능한 현재 조례를 임기 2년에 3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최대 8년)

○ 주민자치위원 해촉자에 대한 재위촉 금지 명문화(안 제20조)

- 해촉자에 대한 재위촉 금지조항 신설로 주민자치위원 위촉근거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 체계화(안 제23조)

- 위원회 개최시 30,000원 범위 내 월1회에 한하여 실비 지급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32, FAX 453-21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의견수렴서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2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미비점 보완과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각종 경연대회 등에 대한 우수자 시상 근거 마련(안 제7조)
 - 각종 경연대회 및 발표회, 직무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우수자 시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 문화·체육·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 기능 명문화(안 제16조)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참여 활성화로 주민자치기능 강화
- 주민자치위원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17조)
 - 임기 2년에 무제한 연임 가능한 현재 조례를 임기 2년에 3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최대 8년)
- 주민자치위원 해촉자에 대한 재위촉 금지 명문화(안 제20조)
 - 해촉자에 대한 재위촉 금지조항 신설로 주민자치위원 위촉근거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 체계화(안 제23조)
 - 위원회 개최시 30,000원 범위 내 월1회에 한하여 실비 지급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당해 동”을 “해당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구청장과 동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경연대회 및 발표회, 직무교육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

제10조제6항 중 “내역”을 “내용”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문화·체육·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령”을 “나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위원 및 고문”을 “고문”으로, “하되”를 “하되 1회에 한정하여”로, “있다”를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임기에 포함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지”를 “부터”로, “한다”를 “하며, 해촉후 동일인 및 동일세대원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태하였거나”를 “게을리 하였거나”로 한다.

제23조 “위원회 개최시에는 참석 고문 및 위원에게 30,000원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개최시에는 참석 고문 및 위원에게 30,000원의 범위내에서 월1회에 한정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까지로 하며 이를 최초 임기의 만료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u>당해 동</u> 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등) ① ----- ----- --. ----- <u>해당동</u> ----- ----- ----- -.
② 자치센터의 동별 명칭은 <u>당해</u> 00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② ----- <u>해당</u> ----- -----.
제5조(기능) ① (생략)	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능 중 <u>당해</u>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 <u>해당</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② (생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u>당해</u>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u>해당</u> ----- ----- ----- -----.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u>기타</u>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 ----- <u>그 밖에</u> ----- ----- ----- -----.
제7조(운영) ① ~ ③ (생략)	제7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당해</u>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④ ----- ----- <u>해당</u> -----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1.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 3. (생략)

② (생략)

제11조(이용 등) ①·② (생략)

③ 주민은 제10조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⑤ (생략)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 등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4조(보고) ① (생략)

②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분기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 ① -----

1. 생략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6. 생략

〈신설〉

-----.

1. ----- 전날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해서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① -----

----- 마련하여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

제16조(기능) ① -----

1. 생략

2. ----- · 체육 · -----

3.~6. 생략

7.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감사 각 2명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 선거구내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고, 이외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생략)

③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④·⑤ (생략)

⑥ 동장은 고문과 자문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성명, 연령, 직업)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과 자문위원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제17조(구성 등) ① -----

-----, 해당 -----

-----.

② -----

-----.

1. 해당 -----

-----그 밖의 -----

2. (현행과 같음)

③ -----해당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나
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⑧ (생략)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생략)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 4. (생략)

⑦ -----고문-----
----- 하되 1회에 한정하여 ----- 있으며, 이는 위원의 임기에 포함된다. <단서 삭제>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정해진 -----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해촉) ① -----

-----부터 -----
----- 하며, 해촉후 동일인 및 동일세대원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

2.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
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략)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시에는
참석 고문 및 위원에게 30,000원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게
을리 하였거나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실비보상 등)

-----3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월1회에 한하여-----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39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정재공고

남동구 공고 제2015-297호(2015.02.13.) 공고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중 조문을 신설, 첨가하는데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15. 2.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수정이유

남동구 공고 제2015-297호(2015.02.13.)로 공고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중 지역 축제 및 행사 개최에 따른 사전 현장합동 안전점검과 관련한 ‘지역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

2. 주요내용

○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안전총괄실, 전화: 032-453-2310)에게 제출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310, FAX 453-23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 (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개정조례안(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2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법령의 개정 및 구 조직개편 등 여건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과 상이한 조항 등을 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위원회 기능 현실화함
-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의 구성 인원을 구체화함
- 위원회 위원 중 축제 및 행사의 심의기능을 강화를 위한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
- 위원회 위원의 포괄적 해촉요건을 구체화함
-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 등을 명시
-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 가. 부구청장
 - 나. 재난관리업무담당 부서장
 - 다. 문화예술 및 공연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유관기관의 위원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소방서의 장, 경찰서의 장, 교육장, 군 부대의 대대장급 이상의 지역사령관 등으로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나. 민간위원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불참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9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의한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 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예술 및 공연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⑥ 실무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고,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⑧ 실무위원장은 민간기관·단체에서 축제·행사 주최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역민관협력위원회) ① 실무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보완 지시사항 이행 여부의
현장 확인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관련 임시가설물, 화재취약시설 안전성 여부,
구조·구급대책, 안전관리요원 배치, 혼잡인파 유도, 동선 확보, 전기·가스 안전 등 현장 확인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②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협력위원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은 실무위원회 회의 시 필요한 안건에 따라 관련 위원만으로 구성·운영한다.
-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한 축제의 개최 시 또는 협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④ 협력위원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지적된 사항 중 위원과 함께 현장 확인 시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 조치하고 실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 및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 이외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타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2013.8.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39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의 규정 및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3. 주요내용

-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 제2조)
 -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목적 실현
-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안 제3조)
 - 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 현장확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서 교부
 - 지정기간 : 1년
-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의무 (안 제4조)
 -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진입으로 노력해야 하며,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지정취소 (안 제5조)
 - 지정취소시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함.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실 입주 조건 및 지원 등 (안 제6조)
 - 사회적경제 창업예정자,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희망자,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참조 : 일자리정책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 (전화 : 032)453-2492, FAX : 032)453-57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남동구 규칙 제 3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신청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이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제3조(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때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그 밖에 구청장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현장확인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조(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의무 등) ①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회계에 관한 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업 및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지원을 받은 때
2. 지정 당시 적용된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3. 제4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

고 판단될 때

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때
5. 다른 기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지원) 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내 창업실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우수한 창업 소재를 보유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예정자
 2.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중 희망자
 3. 남동구 주최 사회적경제관련 경연대회 수상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② 제1항의 입주 대상자는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순으로 모집하되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③ 구청장은 창업실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신청,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신청기관명						
대표자		연락처				
전체 유급 근로자 수	명 (여: 명)	취약 계층 근로자 수		명 (여: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소재지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주된 사업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전체서비스 수혜자		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		취약계층서비스 수혜 자 비 율	%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예 ☐ 아니오	매출액		천원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다른 기관의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지원사업의 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연도) - (연번)호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지정기간 :

위 기관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사 업 보 고 서

기 관 일 반 현 황	조 직	기관명					대표자명																			
		(주된)소재지																								
		주된 목적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업종																								
		연계기업명																								
	근 로 자	총근로자수 (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비율(B/A)		%															
		성 별	남자		명		여자		명																	
		연령별	20세 미만	명		20세 이상 30세 미만	명		30세 이상 55세 미만	명		55세 이상	명													
		고용계약 기 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월평균 임 금	정규직		원		비정규직		원																	
		근로 시간	주40시간		명		주 40시간 이하		명																	
		회 계	총수입:					원					총비용(지출):					원								
	영업활동					비영업활동					노무비 (인건비)					교육 훈련비					기타					
	원(%)					원(%)																				
	민간 시장		공공 시장	정부 지원	기업 후원	모기관 지원	금액					금액					금액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사업추진실적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				일 반			
		총계: 명				총계: 명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저소득층	명	저소득층	명				
		고령자	명	고령자	명				
		장애인	명	장애인	명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분야 및 내용							
		서비스 제공가격	평균	원	서비스 수혜 대상자수 (월평균)	총 계	명		
			일반구민	원		취약계층 비중 (B/A)	%		
취약계층			원	일반시민 (A)		명			
			취약계층 (B)	명					
기 타									
향 후 사 업 계 획	별지 작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 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5-2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69번길 5-23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347-1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1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2.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347-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8-7	2015.2.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895-3	2015.2.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1번길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7-12	2015.2.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6-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69번길	5-23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 약2700m지점에서 왼 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5.2.2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269번길 5-23번 기 초구간에 위치하여5-23을 건물번호로 부여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27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래지구 중2-110호선】 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래지구 중2-110호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2.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23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래지구 중2-110호선)
 - 명 칭 : 소래지구 중2-110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규모 : A=1872.0㎡ 중 136.0㎡, L=110.0m 중 15 m, B=15.0~18.0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도시관리과 도시개발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6.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당해시설은 공사완료 공고와 동시에 관리청인 남동구에 귀속됨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	논현동	66-23	도	802	802	인천광역시 남동구	-				
2	논현동	66-40	제	95	95	인천광역시 남동구	-				
3	논현동	66-83	도	134	134	인천광역시 남동구	-				
4	논현동	111-46	대	20	20	정*순	논현동 ***				미등기
5	논현동	111-128	대	92	92	인천시광역시 남동구	-				
6	논현동	111-318	대	237	237	인천시광역시 남동구	-				
7	논현동	111-320	대	8	8	유*동	논현동 ***				미등기
8	논현동	111-321	대	6	6	인천시광역시 남동구	-				
9	논현동	111-322	대	252	146	인천시광역시 남동구	-				
10	논현동	111-323	대	50	50	인천시광역시 남동구	-				
11	논현동	111-324	대	55	55	인천시광역시 남동구	-				
12	논현동	111-325	대	236	215	인천시광역시 남동구	-				
13	논현동	111-326	대	133	12	오*석	논현동 ***				
계				2,120	1,872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5-28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래지구 소1-3호선, 소1-4호선】 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래지구 소1-3호선, 소1-4호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2.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09-6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래지구 소1-3호선, 소1-4호선)
 - 명 칭 : 소래지구 소1-3호선, 소1-4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 규모
 - 소1-3호선 : A=543㎡, L=50.0m, B=10.0m
 - 소1-4호선 : A=34㎡, L=29.0m, B=9.5~10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도시관리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6.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	논현동	109-60	답	31	31	장*수	남구 송의동 ***-**				
						황*덕	남구 송의동 *-***				
2	논현동	109-178	답	300	300	김*희	미국뉴저지 ***** 테네플라이 옛지우드 스트릿 **				
						김****인	미국뉴저지 ***** 올드 태판 오코놀 라인 **				
3	논현동	109-236	대	42	42	권*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교골길27번길 **-*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근저당권 이전	
4	논현동	109-237	대	76	76	황*수	논현동 ***				
5	논현동	109-238	대	12	12	황*수	논현동 ***				소로1-4호선 (금회시행분)
6	논현동	109-239	대	94	94	최*분	논현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압류	
7	논현동	109-240	답	22	22	최*분	논현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압류	소로1-4호선 (금회시행분)
계				577	577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5-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경신지구 소로3-3호선 외 1개노선】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2.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44-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경신지구 소3-3호선, 소1-28호선)
 - 명 칭 :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규모
 - 소로3-3호선 B=6.0m, L=190.0m
 - 소로1-28호선 B=10~17.0m, L=66.0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2015.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당해시설은 공사완료 공고와 동시에 관리청인 남동구에 귀속됨

용 지 조 서

당초 번호	구분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관리 관계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변경 없음	1	609	도	1,147	50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 없음
2	변경 없음	2	643-18	과	4	4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 없음
3	당초		643-19	과	4	4	최*례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서로4번길 41-28,***호				
	변경	3	643-19	과	4	4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변경
4	당초		643-20	과	664	664	황*철	인천광역시남동구매소홀로475번길 18,16동***호				
	변경	4	643-20	과	664	664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변경
5	당초		644-8	목	92	92	송*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				
	변경	5	644-8	목	92	92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변경
6	당초		644-7	도	149	149	김*건 외2인	경남창원시동정동777 혼한웰가***동***호				
	변경	6	644-7	도	149	149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변경
7	당초		636-2	전	134	134	이*화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934 이삭아파트***동***호				
	변경	7	636-2	전	134	134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변경
8	당초		644-6	대	6	6	김*건 외2인	경남창원시동정동777 혼한웰가***동***호				
	변경	8	644-6	대	6	6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변경
9	당초		643-17	전	15	15	문*순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70-5 동아아파트***동***호				
	변경	9	643-17	전	15	15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변경
10	변경 없음	10	638-5	과	256	256	문*자	인천광역시남동구장승남로 70-30,***동***호				변경 없음
11	변경 없음	11	638-8	목	12	12	문*자	인천광역시남동구장승남로 70-30,***동***호				변경 없음
12	변경 없음	12	638-10	창	105	105	문*자	인천광역시남동구장승남로 70-30,***동***호				변경 없음
13	변경 없음	13	638-7	목	34	34	문*자	인천광역시남동구장승남로 70-30,***동***호				변경 없음
14	당초		1068-27	도	210	210	국	재무부				
	변경	14	1068-32	도	209	209	국	재무부				변경 (분할)
	변경	15	1068-31	도	3	3	국	재무부				변경 (분할)
15	당초		635-19	전	90	90	고*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변경	16	635-22	전	39	39	고*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변경 (분할)
16	당초		635-20	전	59	59	고*철 외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변경	19	635-23	전	27	27	고*철 외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변경 (분할)
17	당초		635-21	전	106	106	기쁜** **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변경	20	635-21	전	106	106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변경
18	변경 없음	21	1068-6	도	534	48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 없음
	신규	17	655-9	전	74	74	고*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구역 변경후 편입
	신규	18	655-10	전	6	6	고*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구역 변경후 편입
	당초	계			3,621	2,038						
	변경	계			3,620	2,037						

☐ 지장물 조서

구분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위	수 량	비고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변경 없음	1	구월동	643-20	수 목	소나무	주	10		인천광역시남동구매소홀로 475번길**	황*철	
변경 없음	2	구월동	644-8	담 장	디자인헨스	m	17.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	송*자	
				대 문	철제출입문	개	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	송*자	
				수 목	감나무	주	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	송*자	
변경 없음	3	구월동	644-7	정화조		개	1		창원시동정동777흥한웰가 102동***호	김*건 외2인	
				수 목	감나무	개	1		창원시동정동777흥한웰가 102동***호	김*건 외2인	
				담 장	EGI헨스	m	40.0		창원시동정동777흥한웰가 102동***호	김*건 외2인	
변경 없음	4	구월동	644-1	담 장	블록	m	8.5		창원시동정동777흥한웰가 102동***호	김*건 외2인	
				담 장	메쉬헨스	m	22.5		창원시동정동777흥한웰가 102동***호	김*건 외2인	
				대 문	철제출입문	개	1		창원시동정동777흥한웰가 102동***호	김*건 외2인	
변경 없음	5	구월동	636-2	수 목	유실수	주	1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934이삭아파트101동***호	이*화	
				수 목	배나무	주	5		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934이삭아파트101동***호	이*화	
변경 없음	6	구월동	638-5	수 목	배나무	주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70-30,102동***호(삼익 세라믹아파트)	문*자	
변경 없음	7	구월동	638-10	건 물	블럭슬라브	m2	10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70-30,102동***호 (삼익세라믹아파트)	문*자	
				대 문	가설판넬	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70-30,102동***호(삼익 세라믹아파트)	문*자	
당초	8	구월동	635-19	수 목	감나무	주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대 문	철제메쉬	개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담 장	철제메쉬	m	50.7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대 문	철제메쉬	개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옹 벽	석 축	m	7.0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수 목	은행나무	개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변경	8	구월동	635-22	수 목	감나무	주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대 문	철제메쉬	개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담 장	철제메쉬	m	50.7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대 문	철제메쉬	개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수 목	은행나무	개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당초	9	구월동	635-20	수 목	참나무	주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건 물	콘크리트	m2	3.7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수 목	조경수	개	14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수 목	채소	개	30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수 목	소나무	개	5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대 문	철제메쉬	개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변경	9	구월동	635-23	수 목	참나무	주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수 목	조경수	개	14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수 목	채소	개	30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수 목	소나무	개	5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대 문	철제메쉬	개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외1인	
당초	10	구월동	655-1	수 목	감나무	주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수 목	배나무	주	8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변경	10	구월동	655-9	수 목	복숭아	주	2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수 목	배나무	주	6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수 목	감나무	주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수 목	대추나무	주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당초	11	구월동	655-2	수 목	은행나무	개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수 목	단풍나무	개	2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수 목	사철나무	개	5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변경	11	구월동	655-10	수 목	은행나무	개	1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수 목	단풍나무	개	2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수 목	사철나무	개	5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철	
당초	12	구월동	635-21	옹 벽	보강토	m	29.0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	기쁜** **교회	
변경	12	구월동	635-21	옹 벽	보강토	m	29.0		인천광역시남동구 주안동****-**	남** 교회	
변경 없음	13	구월동	655-4	건 물	콘크리트	m2	47.6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고세관	
당초	14	구월동	1068-6	담 장	가드웬스	m	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	
				담 장	가드웬스	m	26.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	
변경	14	구월동	655-4	담 장	가드웬스	m	26.0		인천광역시남동구 주안동****-**	남**교회	
				담 장	가드웬스	m	26.0		인천광역시남동구 주안동****-**	남**교회	